

# ACCIDENT!

# ABL



# INJURY!



[2020년 4월 1일 제작]

## (무)ABL더나는 상해보험

2004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가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A Better Life

1954년 출범한 ABL생명은 60여 년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쌓아온 선진 상품개발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입보험료 2조 3,390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 **총자산 19조 8,873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출처:ABL생명 FY2019 결산보고서〉

##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년 역사와 전통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금융 기법과 노하우, 변액·보장성보험부터 연금·저축성보험까지 30여종의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명청약시스템과 사이버센터/모바일센터를 통해 보험가입, 청약, 납입, 사고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처리
- 업계 최초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하게 송금
- 업계 최초 화상 고객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고객 상담
- 업계 최초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제도 시행
- 2012년 보험업계 최초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특허 제 10-1211809호)

워라벨 시대에 다양한 상해 위험보장!

# 무배당 ABL더나은상해보험2004



## 일반재해, 교통재해는 물론 대중교통재해까지 함께 보장

- 삶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사고(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대중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은 최대 3억원까지,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은 최대 2억원까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 재해로 인한 사망보장, 장애급여금, 장애연금까지 주계약 하나로 보장

- 재해로 인한 사망은 물론,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애 발생 시 10년동안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80% 이상의 장애 발생 시 10년동안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재해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재해로 인한 수술에 대한 재해수술급여금(1회당 30만원)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에 대한 진단급여금(2천만원, 최초 1회 진단 확정에 한함)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양한 선택특약 가입으로 입원, 수술까지 체계적으로 보장

- 재해로 인한 골절 사고 발생 시, 골절등급별로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발생 빈도가 높은 깁스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깁스(Cast)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수술의 종류에 따라 (무)수술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급하며, 3일 초과 입원 시에는 4일차부터 입원비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은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장수 시대에 발맞추어 주계약의 경우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만기환급형 선택 시, 보장은 보장대로, 만기시엔 50% 또는 100%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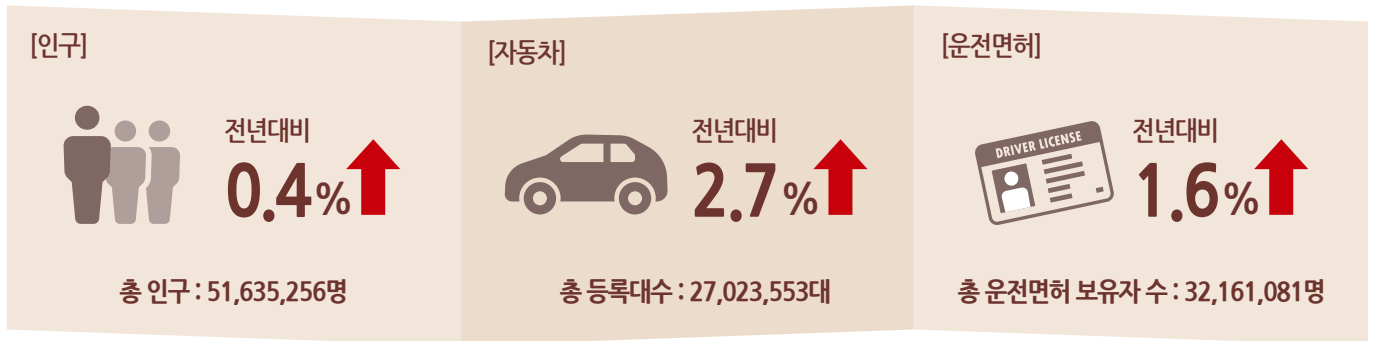
- 2형(50% 만기환급형) 또는 3형(100% 만기환급형)을 선택하시면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만기 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상품특징은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은?

## ☑ 교통여건의 변화



\* 출처 :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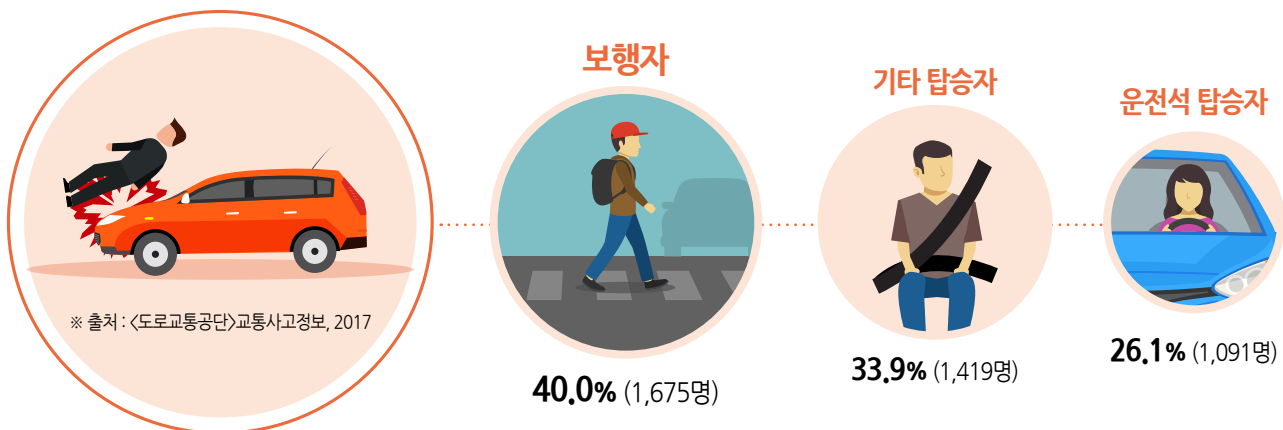
## ☑ 교통재해 개념



### Q.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교통재해 일까요?

- A1. 교통재해라 함은, (1)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과의 충돌, 접촉 등으로 입은 불의의 사고, (2)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및 (3) 통행 중 건조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A2. 교통기관이라 함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공기, 기차, 전철, 선박, 버스, 자동차, 오토바이, 경운기 등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도 포함합니다.

## ☑ 교통사고 시 사망자 구분(상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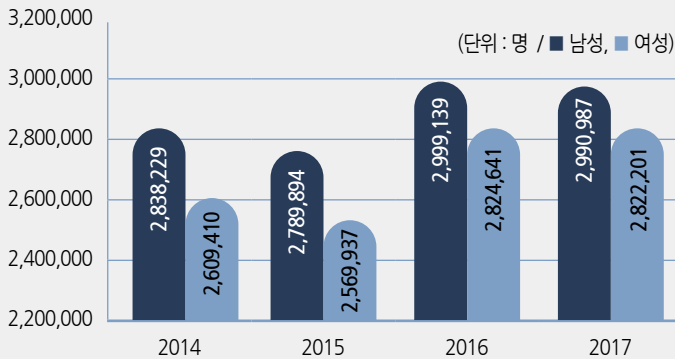
# 응급사고, 누구에게나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예기치 않은 응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재해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 연간 5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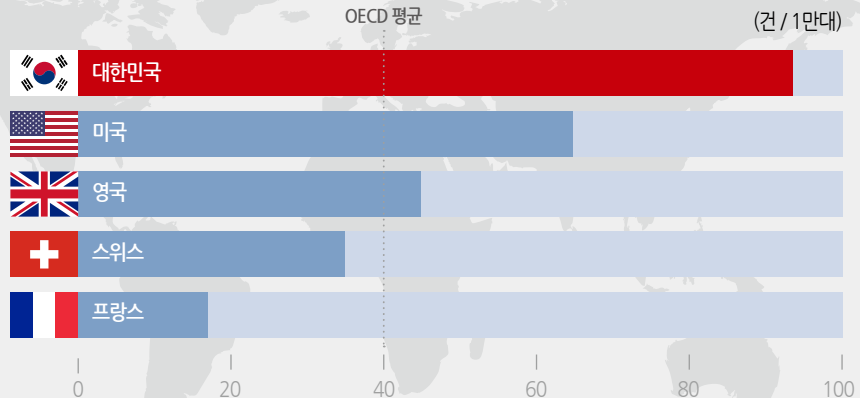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남자	2,838,229	2,789,894	2,999,139	2,990,987
여자	2,609,410	2,569,937	2,824,641	2,822,201
계	5,447,639	5,359,831	5,823,780	5,813,188

※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OECD 국가별 교통사고]

- OECD 회원국 평균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약 2배
-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2위
- 우리나라 평균 93건 / 1만대
- OECD 회원국 평균 41.2건 / 1만대



※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5년

# 보험금 지급 기준

## 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만기환급금 (2형(50% 만기환급형) 및 3형 (100% 만기환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형(5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형(10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재해 사망 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억원	
재해 장해 급여금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 장해 연금	일반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만원을 확정지급	
	교통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재해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2형(50% 만기환급형) 및 3형(100% 만기환급형)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통재해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고 있지 않을 때, 교통기관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입는 불의의 사고 또는 통행 중에 건조물 등의 낙하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는 불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환급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등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관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재해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2가지 이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드립니다.
-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과 재해장해연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재해장해연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협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 후의 "직중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은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등급별 골절치료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	1등급 100만원   2등급 40만원   3등급 30만원   4등급 20만원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	외모 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 II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애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애지급률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50만원을 확정지급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무)수술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4종 100만원   3종 50만원   2종 30만원   1종 1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재해사망보장특약 II [상해보험부가용], (무)재해장해보장특약[상해보험부가용], (무)재해장해연금특약[상해보험부가용]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및 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후의 “직중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에서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뺑소니사고와 무보험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입원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기준

##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재해입원보장특약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 시니어특정 질병·수술 보장특약II (갱신형)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통풍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2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만원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견관절(어깨관절), 고관절(엉덩이관절) 혹은 슬관절(무릎관절) 중 최초로 발생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1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0만원
	관절염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1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만원
(무)수술보장특약III (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4종 100만원   3종 50만원   2종 30만원   1종 10만원
(무)신입원특약IV (갱신형)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 단계별로 더받는 입원특약II (갱신형)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지급 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무)응급실내원특약II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4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2만원

- (무)재해입원보장특약, (무)신입원특약IV(갱신형) 및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무)응급실내원특약II(갱신형)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을 위한 안내

###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
주계약	(무)ABL더나은상해보험 2004	1형(순수보장형)	80세 만기, 100세 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65세 미만: <b>5,000만원</b> (단일가입) 65세 이상: <b>2,500만원</b> (단일가입)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			

#### 특약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선택특약 (비갱신형)	(무)등급별 골절·킵스특약	5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500만원 ~ 2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II [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 ~ 2억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 ~ 5,000만원 (주계약 1배 이내)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단일가입)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500만원 ~ 1억원	
	(무)수술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재해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3,000만원	
선택특약 (갱신형)	(무)시니어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II (갱신형)	1,000만원(단일가입)	500만원
	(무)수술보장특약III (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신입원특약IV (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II (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응급실내원특약II (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단체취급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보험료 예시표

### 주계약 보험료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비위험	1형(순수보장형)	23,000	24,000	24,500	13,500	14,000	14,500
	2형(50%만기환급형)	30,500	35,000	41,000	18,000	20,500	24,500
	3형(100%만기환급형)	45,500	64,500	129,500	26,500	38,500	79,000
중위험	1형(순수보장형)	27,500	29,000	29,500	15,000	15,500	16,500
	2형(50%만기환급형)	36,500	42,000	50,000	20,000	23,000	27,500
	3형(100%만기환급형)	54,000	77,500	155,000	29,500	43,000	89,000
고위험	1형(순수보장형)	29,000	30,500	31,500	16,000	17,000	18,000
	2형(50%만기환급형)	38,500	44,500	52,500	21,500	25,000	30,500
	3형(100%만기환급형)	56,500	81,500	163,000	32,000	47,000	97,500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약 보험료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다만, (무)특정재해보장특약은 70세만기 20년납, 50세는 70세만기 15년납,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외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단위 : 원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등급별 골절·갑상특약		2,180	2,130	2,050	2,280	2,430	2,550
(무)특정재해보장특약		1,200	1,100	1,200	900	1,000	1,200
(무)플러스정기특약		9,600	11,800	14,300	4,900	5,900	6,900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710	790	870	270	310	360
	중위험	980	1,100	1,210	350	410	460
	고위험	1,060	1,200	1,330	420	480	55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670	670	650	480	550	600
	중위험	1,030	1,030	1,000	680	770	850
	고위험	1,150	1,150	1,110	840	960	1,05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880	990	1,030	270	310	350
	중위험	1,290	1,450	1,520	360	420	470
	고위험	1,430	1,600	1,670	440	500	560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650	670	720	330	370	430
(무)수술보장특약		9,000	10,400	11,700	9,100	10,100	10,300
(무)입원보장특약		2,900	3,200	3,500	3,600	4,100	4,500
(무)재해입원보장특약		1,100	1,100	1,000	1,200	1,400	1,500
(무)시니어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1,506	1,859	2,470	1,865	2,279	3,991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1,400	2,500	4,500	2,000	3,200	5,300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1,500	1,500	2,400	1,800	1,700	3,400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2,500	2,600	4,300	2,700	2,900	5,700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820	820	990	890	760	870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 비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비위험 단위 : 원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88,000	-	0.0%	168,000	-	0.0%	564,000	-	0.0%	396,000	-	0.0%
3년	864,000	230,000	26.6%	504,000	112,500	22.3%	1,692,000	752,000	44.4%	1,188,000	549,500	46.3%
5년	1,440,000	601,000	41.7%	840,000	341,500	40.7%	2,820,000	1,625,500	57.6%	1,980,000	1,198,000	60.5%
10년	2,880,000	1,444,000	50.1%	1,680,000	844,000	50.2%	5,640,000	3,744,500	66.4%	3,960,000	2,765,500	69.8%
20년	5,760,000	2,897,000	50.3%	3,360,000	1,705,500	50.8%	11,280,000	8,146,000	72.2%	7,920,000	6,084,500	76.8%
30년	5,760,000	2,065,500	35.9%	3,360,000	1,228,000	36.5%	11,280,000	8,817,000	78.2%	7,920,000	6,843,500	86.4%
40년	5,760,000	-	0.0%	3,360,000	-	0.0%	11,280,000	8,730,500	77.4%	7,920,000	7,224,500	91.2%
50년							11,280,000	6,749,500	59.8%	7,920,000	6,281,500	79.3%
60년							11,280,000	-	0.0%	7,92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20,000	-	0.0%	246,000	-	0.0%	684,000	-	0.0%	486,000	-	0.0%
3년	1,260,000	485,500	38.5%	738,000	262,000	35.5%	2,052,000	982,500	47.9%	1,458,000	718,000	49.2%
5년	2,100,000	1,098,000	52.3%	1,230,000	634,000	51.5%	3,420,000	2,079,500	60.8%	2,430,000	1,525,500	62.8%
10년	4,200,000	2,554,500	60.8%	2,460,000	1,499,500	61.0%	6,840,000	4,764,000	69.6%	4,860,000	3,498,500	72.0%
20년	8,400,000	5,422,000	64.5%	4,920,000	3,196,500	65.0%	13,680,000	10,470,500	76.5%	9,720,000	7,750,500	79.7%
30년	8,400,000	5,313,500	63.3%	4,920,000	3,140,000	63.8%	13,680,000	11,807,000	86.3%	9,720,000	8,979,500	92.4%
40년	8,400,000	4,200,000	50.0%	4,920,000	2,460,000	50.0%	13,680,000	12,597,500	92.1%	9,720,000	9,973,000	102.6%
50년							13,680,000	11,810,000	86.3%	9,720,000	9,857,500	101.4%
60년							13,680,000	6,840,000	50.0%	9,720,000	4,86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74,000	-	0.0%	462,000	-	0.0%	876,000	-	0.0%	618,000	-	0.0%
3년	2,322,000	1,139,000	49.1%	1,386,000	676,000	48.8%	2,628,000	1,351,500	51.4%	1,854,000	958,000	51.7%
5년	3,870,000	2,404,000	62.1%	2,310,000	1,442,500	62.4%	4,380,000	2,795,500	63.8%	3,090,000	2,015,000	65.2%
10년	7,740,000	5,514,500	71.2%	4,620,000	3,306,500	71.6%	8,760,000	6,360,500	72.6%	6,180,000	4,618,000	74.7%
20년	15,480,000	12,203,500	78.8%	9,240,000	7,306,000	79.1%	17,520,000	14,100,000	80.5%	12,360,000	10,321,000	83.5%
30년	15,480,000	14,036,000	90.7%	9,240,000	8,410,000	91.0%	17,520,000	16,476,000	94.0%	12,360,000	12,276,500	99.3%
40년	15,480,000	15,480,000	100.0%	9,240,000	9,240,000	100.0%	17,520,000	18,635,000	106.4%	12,360,000	14,214,500	115.0%
50년							17,520,000	19,711,500	112.5%	12,360,000	15,376,500	124.4%
60년							17,520,000	17,520,000	100.0%	12,360,000	12,360,000	100.0%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예시표

## 중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중위험 단위 : 원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48,000	-	0.0%	186,000	-	0.0%	726,000	-	0.0%	516,000	-	0.0%
3년	1,044,000	304,000	29.1%	558,000	142,000	25.4%	2,178,000	1,015,500	46.6%	1,548,000	764,500	49.4%
5년	1,740,000	756,500	43.5%	930,000	401,500	43.2%	3,630,000	2,156,500	59.4%	2,580,000	1,625,000	63.0%
10년	3,480,000	1,794,000	51.6%	1,860,000	979,000	52.6%	7,260,000	4,939,000	68.0%	5,160,000	3,726,000	72.2%
20년	6,960,000	3,573,500	51.3%	3,720,000	1,970,500	53.0%	14,520,000	10,755,000	74.1%	10,320,000	8,233,000	79.8%
30년	6,960,000	2,548,000	36.6%	3,720,000	1,443,500	38.8%	14,520,000	11,804,500	81.3%	10,320,000	9,477,000	91.8%
40년	6,960,000	-	0.0%	3,720,000	-	0.0%	14,520,000	12,018,000	82.8%	10,320,000	10,353,000	100.3%
50년							14,520,000	9,684,000	66.7%	10,320,000	9,246,000	89.6%
60년							14,520,000	-	0.0%	10,32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04,000	-	0.0%	276,000	-	0.0%	870,000	-	0.0%	624,000	-	0.0%
3년	1,512,000	598,500	39.6%	828,000	305,000	36.8%	2,610,000	1,292,000	49.5%	1,872,000	964,500	51.5%
5년	2,520,000	1,340,000	53.2%	1,380,000	725,500	52.6%	4,350,000	2,701,500	62.1%	3,120,000	2,021,500	64.8%
10년	5,040,000	3,111,000	61.7%	2,760,000	1,710,000	62.0%	8,700,000	6,168,500	70.9%	6,240,000	4,620,500	74.0%
20년	10,080,000	6,585,500	65.3%	5,520,000	3,640,000	65.9%	17,400,000	13,563,500	78.0%	12,480,000	10,274,000	82.3%
30년	10,080,000	6,430,000	63.8%	5,520,000	3,585,000	64.9%	17,400,000	15,424,500	88.6%	12,480,000	12,096,000	96.9%
40년	10,080,000	5,040,000	50.0%	5,520,000	2,760,000	50.0%	17,400,000	16,718,000	96.1%	12,480,000	13,728,000	110.0%
50년							17,400,000	15,903,500	91.4%	12,480,000	13,678,000	109.6%
60년							17,400,000	8,700,000	50.0%	12,480,000	6,24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30,000	-	0.0%	516,000	-	0.0%	1,092,000	-	0.0%	786,000	-	0.0%
3년	2,790,000	1,412,000	50.6%	1,548,000	749,000	48.4%	3,276,000	1,705,500	52.1%	2,358,000	1,262,500	53.5%
5년	4,650,000	2,929,000	63.0%	2,580,000	1,610,000	62.4%	5,460,000	3,523,000	64.5%	3,930,000	2,618,500	66.6%
10년	9,300,000	6,666,500	71.7%	5,160,000	3,710,000	71.9%	10,920,000	8,023,000	73.5%	7,860,000	5,975,500	76.0%
20년	18,600,000	14,688,500	79.0%	10,320,000	8,212,500	79.6%	21,840,000	17,805,500	81.5%	15,720,000	13,375,000	85.1%
30년	18,600,000	16,874,000	90.7%	10,320,000	9,451,500	91.6%	21,840,000	20,891,500	95.7%	15,720,000	16,074,500	102.3%
40년	18,600,000	18,600,000	100.0%	10,320,000	10,320,000	100.0%	21,840,000	23,816,000	109.0%	15,720,000	18,855,000	119.9%
50년							21,840,000	25,297,500	115.8%	15,720,000	20,411,000	129.8%
60년							21,840,000	21,840,000	100.0%	15,720,000	15,720,000	100.0%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고위험 단위 : 원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6,000	-	0.0%	204,000	-	0.0%	774,000	-	0.0%	612,000	-	0.0%
3년	1,098,000	327,500	29.8%	612,000	166,500	27.2%	2,322,000	1,098,500	47.3%	1,836,000	936,000	51.0%
5년	1,830,000	806,000	44.0%	1,020,000	451,500	44.3%	3,870,000	2,322,500	60.0%	3,060,000	1,967,000	64.3%
10년	3,660,000	1,906,000	52.1%	2,040,000	1,090,000	53.4%	7,740,000	5,314,500	68.7%	6,120,000	4,495,500	73.5%
20년	7,320,000	3,791,000	51.8%	4,080,000	2,190,000	53.7%	15,480,000	11,574,500	74.8%	12,240,000	9,952,500	81.3%
30년	7,320,000	2,703,000	36.9%	4,080,000	1,621,500	39.7%	15,480,000	12,742,000	82.3%	12,240,000	11,583,500	94.6%
40년	7,320,000	-	0.0%	4,080,000	-	0.0%	15,480,000	13,050,500	84.3%	12,240,000	12,856,000	105.0%
50년							15,480,000	10,611,000	68.5%	12,240,000	11,633,500	95.0%
60년							15,480,000	-	0.0%	12,24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34,000	-	0.0%	300,000	-	0.0%	930,000	-	0.0%	738,000	-	0.0%
3년	1,602,000	646,500	40.4%	900,000	337,500	37.5%	2,790,000	1,391,500	49.9%	2,214,000	1,170,000	52.8%
5년	2,670,000	1,430,500	53.6%	1,500,000	798,000	53.2%	4,650,000	2,899,000	62.3%	3,690,000	2,423,000	65.7%
10년	5,340,000	3,303,500	61.9%	3,000,000	1,880,000	62.7%	9,300,000	6,608,500	71.1%	7,380,000	5,516,500	74.7%
20년	10,680,000	6,975,500	65.3%	6,000,000	4,001,500	66.7%	18,600,000	14,527,000	78.1%	14,760,000	12,274,500	83.2%
30년	10,680,000	6,811,000	63.8%	6,000,000	3,946,500	65.8%	18,600,000	16,550,500	89.0%	14,760,000	14,564,000	98.7%
40년	10,680,000	5,340,000	50.0%	6,000,000	3,000,000	50.0%	18,600,000	18,001,500	96.8%	14,760,000	16,702,000	113.2%
50년							18,600,000	17,186,500	92.4%	14,760,000	16,723,000	113.3%
60년							18,600,000	9,300,000	50.0%	14,760,000	7,38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78,000	-	0.0%	564,000	-	0.0%	1,158,000	-	0.0%	918,000	-	0.0%
3년	2,934,000	1,487,000	50.7%	1,692,000	838,000	49.5%	3,474,000	1,814,000	52.2%	2,754,000	1,508,000	54.8%
5년	4,890,000	3,083,000	63.0%	2,820,000	1,777,500	63.0%	5,790,000	3,745,000	64.7%	4,590,000	3,094,500	67.4%
10년	9,780,000	7,017,000	71.7%	5,640,000	4,076,000	72.3%	11,580,000	8,528,000	73.6%	9,180,000	7,030,000	76.6%
20년	19,560,000	15,456,500	79.0%	11,280,000	9,001,000	79.8%	23,160,000	18,927,500	81.7%	18,360,000	15,730,000	85.7%
30년	19,560,000	17,749,000	90.7%	11,280,000	10,362,500	91.9%	23,160,000	22,226,000	96.0%	18,360,000	18,998,000	103.5%
40년	19,560,000	19,560,000	100.0%	11,280,000	11,280,000	100.0%	23,160,000	25,379,500	109.6%	18,360,000	22,424,500	122.1%
50년							23,160,000	26,986,000	116.5%	18,360,000	24,295,500	132.3%
60년							23,160,000	23,160,000	100.0%	18,360,000	18,360,000	100.0%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합니다.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 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라. 직업 및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
위험등급	(A급)	(B, C급)	(D, E급)

마. 계약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후의 “직중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교통재해에 관한 안내

1.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에 관한 안내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라.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항공사업법」에서 정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중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인면서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의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 (2) 시외버스 운송사업
    - (3) 택시 운송사업
    - (4) 마을버스 운송사업(단, 전세버스 및 셔틀버스는 제외)
  -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충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사'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단체취급특약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불만족 접수 안내

### <불만 접수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